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(2020. 8.)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,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5조)

- 당연직 위원(14명 → 6명)

- (현행) 행정부지사,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
- (변경)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경제통상국장, 신성장산업국장, 바이오산업국장, 정책기획관

- 위촉직 위원(6명 → 14명)

- (현행) 위촉직 위원수가 3분의 1이상(지방행정에 관한 외부전문가)
- (변경)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(지방행정에 관한 외부전문가+도의원 1명)

○ 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절차 명확화(안 제13조)

- (현행)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평가결과 위원회에 제출
- (변경)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 1개월 이내 자체평가결과 총괄부서에 제출

○ 성과점검 절차 명확화(안 제15조)

- (현행) 도지사는 성과점검 후 부서평가 반영
- (변경) 총괄부서는 성과점검 후 점검결과 위원회 제출

○ 기타(안 제2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, 제18조 등)

- 부서 정의 신설, 조직기구 변경사항 반영, 과제선정 유사·중복 검증 명확화
- 공개 대상 추가, 위원회 존속기한(5년) 규정 신설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○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‘학술연구용역’ 또는 ‘정책연구용역’ 을 활용하고 있음.

- 충북에서도 긴급 현안 대처 및 국책사업 반영 등을 위한 ‘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(POOL)’ 예산으로 매년 10억여 원 이상을 수립·지출하고 있는 바, 연구용역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, 연구결과의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 예산활용이 우려됨.

○ 이에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(2020. 8.)에 따라,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2조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“총괄부서” 와 “주관부서” 를 명확히 구분 정의하여 시행에 따른 행정적 편의를 도모함.

○ **안 제5조**는 ‘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(총 의원수: 20명)’의 당연직 위원수를 현행 14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대신, 위촉직 위원 비율을 현행 “1/3이상(6명)”에서 “과반수 이상(14명)”으로 확대하고, 위촉직 위원 중에 충청북도의원(1명)을 포함한 것임.

- 개정 내용 중 위촉직 위원 비율의 과반수 이상 규정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활동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위원의 안전심의에서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, **현행 제7조의2(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) 조항을 삭제함.**

- 삭제된 제7조의2 내용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와 동일한 내용임.

- 본 조례안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도 내 모든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규정을 따라야 함.

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시행 2020. 08. 07.)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

- 따라서, 현행 제7조의2를 삭제하여도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 심의 안전에 대한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(제척·기피·회피)는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음.

○ **안 제9조**는 도 정책연구용역실명제 대상을 현행 “직속기관·사업소”에서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”까지로 확대하고,

- 정책연구용역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, 용역관련 계획 수립부터 자체평가, 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 용역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임.
 - 이 또한,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도 정책연구용역 추진·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**안 제11조**는 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에 “정책연구용역의 유사·중복 여부” 사항을 추가한 것임.
- 물론 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시, 과제담당관이 용역의 유사·중복여부를 사전 검토하고는 있으나,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유사·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을 명확히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**안 제14조**는 대국민 대상 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“정책연구용역 결과,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”에서 “정책연구용역 결과, 자체평가 결과,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”으로 확대함.
-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연구결과, 연구결과 평가,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건의에 따른 것임.
- **안 제15조**는 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, 연구결과, 자체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종합적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규정함. 이에 위원회가 조례에 따른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지원 노력이 요구됨.
- **안 제18조**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.

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시행 2020. 08. 07.)

제14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」 권고(2020. 8.)에 따라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여 연구용역의 미흡한 관리·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없음.